

대구시 건축 조례

제 정 (1980. 6. 23. 조례 제1283호)  
 전면개정 (1981. 5. 1. 조례 제134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시의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외의 재해위험구역을 포함한다)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 조 (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 영제 14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에 기재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1. 공 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
4. 교정시설
5. 영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4 조 (건폐율 등) ①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10로 한다.

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6/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 6 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 담당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제 7 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 “제 2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제 3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4. “제 4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공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5. “제 5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제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 10 조 (건축심의) ①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의 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용도제한) ① 제 1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 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 기숙사

②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제 3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제 4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제 5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12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2. 제 2 종 " : 200 "
3. 제 3 종 " : 200 "
4. 제 4 종 " : 165 "
5. 제 5 종 " : 200 "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전면 도로 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1. 제 3 종미관지구	2 미터
2. 제 4 종미관지구	"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미관지구	15	8
제 2 종 "	10	6
제 3 종 "	15	9
제 4 종 "	-	-
제 5 종 "	10	6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계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3 층 이 하	100
4 - 10 층	150
11 - 15 층	400
15 층 이 상	500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 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 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 4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8조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표에 계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한다.

구 분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높이의 최저 한도를 10미터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3 / 10	100
최저높이를 10미터이상 20미터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지구	4 / 10	200

제19조 (최고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고도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폐율 : 5 / 10
2. 용적율 : 600%

## 제 5 장 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 내에서는 영제147조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운수시설
3. 교정시설
4. 영부표 제 4 항(근린생활시설)중 제 6 호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 6 장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1조 (용도제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영제148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계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 장
2. 종교시설
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4. 운동시설
5. 교정시설
6. 자동차 관련시설(차고, 세차장을 제외한다)
7. 동물관련시설

제22조 (특정업무지구내의 용도제한) 영제1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 공고한 업무지구 내에서는 제21조에 계기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운수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제 7 장 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3조 (건폐율)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 1종 공지지구 : 2 / 10
2. 제 2종 " : 3 / 10
3. 제 3종 " : 4 / 10

제2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종 공지지구 : 500평방미터
2. 제 2종 " : 400 "
3. 제 3종 " : 200 "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① 제 1종 공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4 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② 제 2종 및 제 3종 공지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 담장 및 바닥면적 3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미터 초과 도로변 : 1.5미터
2. 4 미터 이하 도로변 : 1.0미터

## 제 8 장 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6조 (용도제한) 공항지구 내에서 영제1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화학공장

제27조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9 장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8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근린공공시설
7. 일용품 소매점, 이용점, 미용원, 약국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생활 시설

## 제10장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29조 (건축제한) 재해 위험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동차 관련시설
2. 동물관련시설
3. 근린운동시설, 운동시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존치기간 6개월이내의 가설 건축물

## 제11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30조 (벽면의 위치) 영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물으로부터 1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1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 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장이 지정하는)구역에서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장 대지내의 조경

제34조 (대지내의 조경) 영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 재 밀 도 (평방미터)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	0.2 본 이상	상 록 수 40 낙엽 수 6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0.4 본 이상	-

제35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제168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 기술 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13장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 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36조 (적용의 범위) 이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7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다음각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40미터 이상 도로변 : 1/2
2. 40미터 미만 도로변 : 1/3

제14장 건축위원회

제38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영제171 조 제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9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7 -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 인이상 5 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의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포항시건축조례

(포항시조례제925호1981. 4. 21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포항시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외의 재해위험구역을 포함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 2 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 3 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광이 직접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 4 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 5 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계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 4 조 (건축심의) 1.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용도제한) ①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기타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치료소
6.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7. 교정시설
8. 묘지관련시설
9. 자동차 관련시설
10.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0	8
제 2 종 미관지구	8	6
제 3 종 미관지구	8	6
제 4 종 미관지구		
제 5 종 미관지구	8	6

②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 제 3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내지 제 8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 제 4 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제 5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제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6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300평방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150평방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200평방미터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전면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거리가 상을 뛰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에의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2 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2 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2 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2 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2 미터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제 4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3 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제외한다)은 다음표에 제기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위 : 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비 고
3 층 이 하	100	
4 층 - 10 층	150	
11 층 - 15 층	200	
15 층 이 상	600	

② 제 1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제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대항하는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의 면적의 1/8 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3 장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2조 (최저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최저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범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폐율 : 3 / 10
2. 용적율 : 100%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300평방미터

제13조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지정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폐율 : 6 / 10
2. 용적율 : 800%

### 제 4 장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조 (용도제한) 임항지구내에서는 영 제14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운항만청,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축항사무소, 항만공사사무소, 항만보안관제사무소, 항만용역사, 도선사무소와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및 차고, 소방시설, 보안시설
2. 임항철도에 부수되는 건축물, 조선소, 선박수리공장, 선가대, 간선거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3. 해상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의료 시설, 합숙소, 급식소, 공중욕탕, 이발소, 휴게소 및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유키장)
4. 임항창고(냉동창고, 싸이로, 연료저장소) 선객이용관계 시설, 급유시설, 수(소)화물 취급소

제5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15조 (벽면의 위치) 영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을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16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관공서, 아파트, 공동주택, 은행은 투시담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대지내의 조경

제19조 (대지내의 조경) 영 제16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수고 2미터이상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비율 (%)
교목 (출기가 굵고 높 아지라는 나무)	0.4분 이상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목 (출기와 가지의 구 별이 분명하지 않 고 키가낮은 나무)	0.6분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 제16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취득자 2인이상인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사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7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1조 (적용범위) 이정의 규정은 법제5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건폐율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 이하로 한다. 다만, 조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치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제23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2분의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소한도는 당해지구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②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최소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것으로 한다.

$$* 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최소한도면적}}{\text{당해대지면적}}$$

제24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5조 (대지이외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띄워야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기능상 부득이산증축)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등은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 포항시 조례제645(77. 1. 10) 공치지구 건축조례  
조례제645(77. 1. 10) 임항지구 건축조례  
조례제645호(77. 1. 10) 미관지구 건축조례  
조례제508호(73. 5. 11) 건축공사 감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존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주시건축조례

(경주시조례 제900호 1981. 5. 1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2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3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 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 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4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한국 고유의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5종 미관지구”라 함은 영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4조 (건축심의) ①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도제한) ① 제1종 내지 제2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가축병원, 다만 종합병원에 부속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지를 포함한다)
5. 연탄공장, 저탄장, 창고시설
6. 제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7. 양곡가공업소, 다만 제과점은 제외한다.
8. 석물가공공장
9. 정육점, 세탁소
10. 옥외 작업장을 갖는 건축점
11. 공장
12.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② 제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계기하는 건축물

③ 제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영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 계기하는 건축물
2.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④ 제5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 불국사 주변에 지정한 제5종 미관지구내(이하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라 한다)에서는 “별도1”에서 지정하는 가구별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내 지정된 요식 및 여관가구와 여관 및 주거가구내에서는 단일용도를 선택 건축하여야 한다.

제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30평방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65평방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평방미터

② 대지의 주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간이 있어 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대지안의 공지) ① 제3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주택용 건축물(점용 주택과 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변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설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내에 지정된 용도별 가구내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거가구, 호텔가구, 주거 및 여관가구 : 10분의 5
2. 점포가구, 업무가구 : 10분의 7
3. 요식 및 여관가구  
가. 여관 용도의 건축물 : 10분의 5  
나. 요식업 용도의 건축물 : 10분의 7

제8조 (건축물의 높이) 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종 및 제2종 미관지구 : 2층이상 다만, 용도상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의 미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종 미관지구 : 1층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지 아니하다.
3. 제4종 미관지구 : 1층으로서 7미터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종 미관지구 : 1층이상
5.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국사 제5종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별도2”에서 지정하는 가구별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층 건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종 및 제4종 미관지구내의 1층건물은 그 높이를 5.4미터 이상 7미터 이하로 처마 높이를 3미터 이상 3.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의 단독주택의 건축면적은 6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제180조 제4항

### 제 3 장 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의 규정을 적용받은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은 40평방 미터로 할 수 있다.

② 미관지구내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인 경우로서 전단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길이의 10분의 7 까지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및 제 2 종 미관지구	8	6
제 3 종 미관지구	10	6
제 4 종 미관지구		
제 5 종 미관지구	10	6

③ 제 1 종 제 2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 축 면 적
2 ~ 3 층	100
4 ~ 5 층	150
6 층 이 상	200

제10조 (부속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일면과 외벽과 이에 대향하는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대지부분의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내의 본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 중 그 구조 및 형태가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이고 도로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건축물의 모양) ①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대칭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탑 이외의 것은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및 색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의 건조대, 장독대, 기타 유사한 시설물은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용도제한)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건축물
2. 농수산물 시험장 및 검사소, 양어장(옥내)
3.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5. 수족관, 동물원, 식물원
6.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7.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 간이음식점, 공중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근린 생활 시설

### 제 4 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14조 (벽면의 위치) 도시계획 구역내의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 층의 외벽 각부분을 건축선으로부터 0.7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0조 제 2 항 또는 영제168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제 3 종 내지 제 5 종 미관지구내의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담장의 구조) 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시계획 구역내의 제 1 종 내지 제 5 종 미관지구내에서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 구조 및 색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5 장 대지내의 조경

제18조 (대지내의 조경) 영제168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평방미터)	상록비율(퍼센트)
교목(줄기가 크고 굵으며 높이가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60 낙엽수 4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4본 이상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제16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장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20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9/10으로 한다. 다만 주거 전용지역, 자연 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 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22조 (용적율) ①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로 한다.

②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를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 배수} = \frac{\text{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 대지면적}}$$

제23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4 이상으로 한다. 단, 미관지구내에는 10분지 5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1/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 부실, 설비등은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증진 규정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7장 건축위원회

제26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17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27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과 건축담당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3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5 조 제 5 항,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각단서, 제 10 조 제 2 항, 제 11 조 제 1 항 단서,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경주시 조례 제 569 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경주시조례 제 568 호 경주시 자연환경보전지구 건축조례, 경주시 규칙 제 230 호 경주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 18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할 수 있다.

- 1. 제 2 종미관지구 2 미터
- 2. 제 3 종 " "
- 3. 제 5 종 " "

제 8 조 (건축물의 규모) 제 2 항중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 지구내에”를 “제 2 종 내지 제 3 종 및 제 5 종 미관지구내에”로 한다.

제 13 조 (용도제한)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장
- 2. 종교시설
- 3.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 4. 운동시설
- 5. 교정시설
- 6.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세차장을 제외한다)
- 7. 동물 관련 시설

제 15 조 내지 제 20 조를 삭제하고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벽면의 위치) 영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8 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 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3 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 21 조 내지 제 25 조”를 “제 16 조 내지 제 20 조”로 하고 제 21 조 내지 제 3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 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 53 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 3 장 내지 제 5 장의 규정 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명 공고하는 간선 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 22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전폐율) 전폐율의 최대한도는 10 분지 8 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치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 제 180 조 제 4 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전폐율에 10 분지 1 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 23 조 (용적율) (1)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 분지 1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 배로 한다.

(2)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2 분지 1 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 1 항에서 적용하는 용적율 이하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text{배수} = \frac{\text{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면적}}{\text{당해 대지 면적}}$$

제 24 조 (대지면적)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30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4 분지 1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 할 거리는 0.5 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 168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떨어져 할 거리의 2 분지 1 이상으로 한다.

구미시 건축 조례

(구미시 조례 제 250 호 1981. 3. 16 공포)

제 1 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용도제한)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매시장, 시장
- 2.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견재상, 공구상, 철물점.
- 3. 공장
- 4. 차고 시설
- 5. 교정 시설
-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 7. 정육점, 세탁소, 장 의사
- 8. 묘지관련 시설
- 9. 자동차 관련 시설
- 10. 단독주택(단 공관과 2 층 이상에 있는 단독 주택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 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전면 도로측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각호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에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 실, 설비 등은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과 증진 규정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건축 위원회는 영 제171조 제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28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에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게 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3 인 이상 5 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전원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전문위원)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 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만 것에 대하여는 증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가들과 자라온 20여년 \*\*\*\*\*

## 기술문화사 도서안내

★ 새로운 구조 설계의 실제 <철근콘크리트조편> ₩ 8,000

**내용** 1. 구조설계실무자료 2. 구조계획 3. 하중 4. 응력산정 5. 단면의 설계 6. 기초설계 7. 설계에 및 준공 슬래브  
※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계산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의 계산으로 보기도문 짜임새 있는 편집.

★ **최신** 建築綜合問題集 ₩ 7,500

**내용** ※ 건축사, 기사, 기타 시험에 완전대비 건축설계, 제도, 계획, 구조, 구조역학, 법규, 설비, 작문. 실제출제문제(부록)를 체계있게 엄선된 문제를 해설과 함께 편집하였음.

★ 住宅計劃과 디자인 ₩ 15,000

※ 최우수 입선작 및 실례 400여종을 대지의 조건, 가족상태, 방향을 고려한 평면투시도를 함께 수록하였음.

★ 建築의配筋 ₩ 4,000

**내용** 설계 및 현장시공상의 참고용으로서 실제사진과 함께 근래 보기도문 配筋상태를 자세히 도면과 이론으로 엮어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꾸며졌음.


**기술문화사**  
 중구 을지로5가 77-1 무궁화BD205호  
 TEL : 266-7776 (울지전화국 옆)